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위)

													업종박	道 과징	금액										(11)	: 만원)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괸	광객	이용/	시설업				·제 의업	유	-원시설	. 업
									호텔업											외국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종합 여행 업	국내 외여 행업	국내 여행 업	5성급 • 4선		2성급	호텔	가족 호텔 업	한국 전통 호텔	호스 텔업	소형 호텔 업	의료 관광 호텔	휴양 콘도 미니 엄업		종합 휴양 업	6년 93	유람		광 도시	한옥 체험 업	국제 회의 시설 업	국제 회의 기획 업	 종합 유원 시설 업	일반 유원 시설 업	기타 유원 시설 업
							, ,	업		업			업							업						ь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	법																									
۴	제4조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지 않게 된 경우		400			200	100					00			400		100					40	100	00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록기간을 위반한 경																										
우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40					
벗어난 경우		800	300	400	3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40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	법																									
4	 제5조																									
가. 법 제5조제2항 및																								1600	1200	800
제4항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게 되는 경																										
우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								
거나 변경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1) 카지노업의 경우 문					2000			
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사업정								
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허가 대상 유원시설						1200	800	
업의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에 대								
하여 변경허가를 받								
지 않고 변경한 경								
÷								
3) 허가 대상 유원시설						800	400	
업의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4) 신고 대상 유원시설								400
업의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에 대								
하여 변경신고를 하								
지 않고 변경한 경								

Ŷ																												ı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법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40	<u>40</u>	400	200	300	400	320	120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	제8조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법				400	35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	제10조																											
지를 붙이거나 관광표																												
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																												
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12조에 따른 기	법	800	400																									
획여행의 실시요건 또	제12조																											
는 실시방법을 위반하																												
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6. 법 제14조를 위반한	법																											
경우	제14조																											
가. 법 제14조제1항을		500	300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																												
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000	400	200																								
나. 법 제14조제2항을		800	400	200																								
위반하여 여행계약																												
서(여행일정표 및 약																												
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																												
																			l					ا				

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4조제3항을		800	400	200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을 포함한다)을 변경																					
한 경우																					
7. 법 제19조제1항 단서	법				400	300	200	200	200	200	200	200									
를 위반하여 등급결정	제19조																				
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8. 법 제20조를 위반한	법																				
경우	제20조																				
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									400				800	80	00						
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을 한 경우																					
나. 분양 또는 회원 모									400				800	80	00						
집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									400				800	80	00						
익보호에 관한 사항																					
을 지키지 않은 경우																					
9. 법 제20조의2에 따른	법														2	200					
야영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																				
을 위반한 경우	의2																				
10. 법 제27조에 따른 문	법																		2000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27조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사업정지																					
			1										1		- 1	I		1			

10일을 갈음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11. 법 제28조를 위반한	법																
경우	제28조																
가. 카지노영업소에 내														2000			
국인(「해외이주																	
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																	
한다)을 과실로 입장																	
시킨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나. 지나친 사행심을 유														2000			
발하는 등 선량한 풍																	
속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다. 카지노영업소에 19														2000			
세 미만인 자를 입장																	
시킨 경우																	
라. 문화체육관광부령														2000			
으로 정하는 영업준																	
칙을 지키지 않은 경																	
우																	
12. 법 제30조를 위반하	법													2000			
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제30조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																	
한 경우(사업정지 10일																	
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13. 법 제32조에 따른 물	법														2000	1600	1200
		I I	I	1	I	ı l	I	1	I	1 1	I	1 1	I	I	1 1		I

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제32조									1						
안전ㆍ위생기준을 지																
키지 않은 경우																
14. 법 제33조를 위반한	법															
경우	제33조															
가. 법 제33조제1항에														2000	1600	1200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																
전성검사 및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																
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																
수																
나. 법 제33조제2항에														2000	1600	
따른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지 않은																
경우																
15. 법 제34조를 위반한	법															
경우	제34조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														1200	800	400
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지키지 않																
은 경우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														2000	1600	1200
조된 유기시설・유																
기기구 또는 유기기																
구의 부분품을 설치																
하거나 사용한 경우																
16. 법 제35조제1항제20	법	800	400	200												
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제35조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									1							

우(여행업자만 해당한																											
다)																											
17. 법 제38조제1항 단서	법	800	400																								
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	제38조																										
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8. 법 제78조를 위반한	법																										
경우	제78조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	800	500	800	400	80
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	800	300	800	400	80
•서류나 그 밖의 물																											
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